「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1. 3. 1.)

바뀜 7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34/compare?from=341&to=340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4:01:3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본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자격을 가진다. ②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신청 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3조(자격)**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부교수 임용 후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연구년 수혜 자격을 가진다. 2. 연구년을 부여받았던 교원이 재 신청할 경우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4조(절차)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4조(절차)** 연구년을 원하는 교원은 연구년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계획서를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수연구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제5조(인원제한) 년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	**제5조(인원 제한)** 연중 연구년 교원의 수는 교원 총수의 2% 이내로 한다.
제7조(의무) 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1.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 업적 1편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및 보조금의 1개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 ①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 수에 산입된다.	**제8조(처우)** 1. 연구년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2. 연구년 기간 중의 교수에 대한 급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3. 연구년 기간 중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 연수에 산입된다.